탄 원 서

사 건 번 호	2026노2154 (제1심 2026고합87)
사 건 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 고 인	김대우 / 전 해군 준장
당 시 보 직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탄 원 인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피고인과 관계	_____
탄원인 주소	_____
연 락 처	_____
제 출 처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법 원 주 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1. 탄원의 취지

탄원인은 피고인 김대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개별 구성요건 및 증거를 다시 살펴주시기를 청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의 고의와 실행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가 유지된다면 책임의 구체적 크기에 상응하도록 형을 감경하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에 대한 영장 없는 신병 확보와 헌법기관의 권한 침해는 엄정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명령을 받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으며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별도로 판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 탄원의 이유

2-1. 1심 판단과 피고인의 담당 업무

2026년 8월 27일 1심은 피고인이 방첩수사단장으로서 정치인 체포조의 편성과 출동에 관여하였고,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킨 행위가 내란 관련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판에서는 수사관 약 49명의 10개 팀 편성 및 주요 정치인의 신병 확보 지시 여부가 다루어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평가할 때에는 상급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포 대상의 명단과 지시, 팀 편성과 출동을 결정한 과정, 실무자에게 내려간 명령의 정확한 내용 및 경찰 등 타 기관과의 협조 관계가 각각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무죄 여부 판단을 위한 주요 쟁점

명단이 전달된 시점, 체포가 예정되었다는 설명의 구체성, 영장이나 법정 수사권이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통화기록과 실제 발신 메시지 등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최초 인력 지원 요청 단계와 특정 인물의 신병 확보를 지시한 단계는 법적 평가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이 불법적인 체포 지시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각 팀의 실제 활동, 구체적인 신병 확보 실행 여부, 피고인이 통제하거나 중단시킨 범위, 사후 보고 내용 등을 엄격히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귀속할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3. 혐의별 구성요건의 구분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중요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행위의 성격 및 지휘·보고의 흐름에 비추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사관을 편성한 행위 자체와, 국회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체포를 명령했다는 행위는 증거상 각각 구별되어야 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어떤 직권을 이용하여 누구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였거나 누구의 권리행사를 막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신병 확보 계획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각 팀에 대한 명령의 구속력도 별도로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4. 예비적 선처 및 양형에 관한 탄원

만일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유지된다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작성했는지 또는 상급자의 요구를 전달·실행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맡았는지, 실제 체포가 어느 범위에서 실행되었는지,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확대 지시한 사정이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참작해 주십시오.

상급자의 지시는 위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면책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시점의 정보, 거부 또는 수정 가능성, 타 지휘관과의 권한 분담, 실행의 지속 시간, 범행 결과는 형의 균형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심 징역 5년이 개인의 실질적 책임에 비례하는지 다시 살펴 가능한 범위의 관대한 처분을 간청합니다.

2-5.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해 주실 사항

특정 인사의 체포가 실제로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었다는 1심 판단은 중대한 사정입니다. 다만 각 수사팀의 발령과 이동 시각, 경찰 등 타 기관이 수사관에게 지시한 내용, 피고인 명의의 메시지에 담긴 명령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독자적 역할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았다는 사실, 출동을 지시했다는 사실, 피고인이 국회 표결 저지의 목적까지 인식했다는 사실이 서로 어떤 증거로 연결되는지 구분하여 주십시오. 이 구별은 무죄 판단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는 범위의 적정 형량에도 직접 관련됩니다.

3. 결어

재판부께서 피고인 김대우에 대한 고의와 실행행위의 증명을 엄정하게 다시 판단하여 주시고,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혐의에는 무죄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역할과 결과에 맞춘 양형을 부탁드립니다.

이 탄원은 헌법질서 침해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건일수록 개인의 형사책임을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판부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합니다.

탄원인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귀중